

1. 퇴직노동자 임금채권 보장제도

□ 제도 개요

- 퇴직노동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금품을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는 제도

□ 사업 내용

지원 요건	지원내용 및 한도																								
<p><일반체당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사유 : 기업의 도산 <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상 도산: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사실상 도산: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지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 (노동자) 도산(파산)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노동자 ○ 지급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도산인정일 2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계좌로 지급 	<p><일반체당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p><2020.1.1. 시행></p> <table border="1"> <thead> <tr> <th>퇴직당시 연령</th> <th>30세 미만</th> <th>30세 이상 40세 미만</th> <th>40세 이상 50세 미만</th> <th>50세 이상 60세 미만</th> <th>60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임금</td> <td>220</td> <td>310</td> <td>350</td> <td>330</td> <td>230</td> </tr> <tr> <td>퇴직급여등</td> <td>220</td> <td>310</td> <td>350</td> <td>330</td> <td>230</td> </tr> <tr> <td>휴업수당</td> <td>154</td> <td>217</td> <td>245</td> <td>231</td> <td>161</td> </tr> </tbody> </table>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p><소액체당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사유 :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 지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노동자 퇴직일 기준 법 적용 대상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 - (노동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 등을 제기한 퇴직노동자 ○ 지급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건 확인 후 지급 	<p><소액체당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급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 상한) * '19.7.1. 이전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는 400만원 상한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사업내용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노동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
 - * 기존에는 퇴직노동자로 한정되었으나, '15.7.1.부터 재직노동자까지 확대
 - * 융자는 사업주가 신청하나, 융자금은 퇴직노동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요건

-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 300인 이하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 사업장, 1년 이상 해당사업 영위
- (노동자)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일부터 1년 이내인 노동자

□ 융자금액 및 조건

- (융자금액) 사업장 당 최고 7천만 원, 노동자 1인당 6백만 원 한도
- (이자율*)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3.7%, 담보제공 시 2.2%
 - * 이자율 1.0%p 한시 인하: 신용·연대보증 3.7% → 2.7%, 담보제공 2.2% → 1.2%('20.1.2.~1.31.)
- (융자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 융자신청 절차

- 융자사유 및 체불금액 확인(지방관서) → 융자 결정(근로복지공단) → 융자 실행(기업은행)

3.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 제도 개요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노동자에게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는 제도

□ 사업 내용

구 분	재직노동자	퇴직노동자
지원대상	① 가동 중인(휴업포함) 사업장 재직자 ②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분 이상 임금체불(휴업수당 포함) ③ 연간소득(부부합산)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20년 5,700만원)	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②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분 이상 임금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 ③ 연간소득(부부합산)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21년 5,852만원) ④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고소·고발) ⑤ 고용센터 구직등록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	1,000만원 범위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 급여 중 미지급금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연 1.5%
융자상환	1년 거치 3년/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1년 거치 3년/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거치 및 상환 기간 중 체당금 수령 시 14일 이내 지급받은 체당금 범위 내 일시상환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1년 거치 3년/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	신용보증 지원(보증료 연 1.0% 자부담)	신용보증 지원(보증료 연 1.0% 자부담)
융자절차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기업은행에서 융자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4. 체불노동자 무료법률 구조지원

□ 사업 목적

- 임금체불 노동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 된 노동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노동자
- (지원내용) 체불 노동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

□ 사업추진 체계

